

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기타직보수 급여 지급대상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		
사업비 (당해년도)	726,559천원	[국비]	[사비]726,559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재무국	재무과	천명철 2133-3211	서은경 2133-3212	오진비 2133-321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4,395,151	(x-) 726,559	(x-) △3,668,592	(x-) △83
연금지급금	(x-) 4,395,151	(x-) 726,559	(x-) △3,668,592	(x-) △83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연금지급금	○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등 726,559,000원	=	726,559천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
 - 공무원연금법 개정('18.9월) 전 퇴직금의 정산 목적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
- 기타 근거
 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
- 사업내용
 -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
 -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 2018. 9월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정산

추진경위

-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26,559	
기타적보수 대상자 퇴직금 지급	2020.01~2020.12	726,559	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퇴직금 지급 예산 통합 운영

4 사업효과

□ 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2017년도	○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공무원 퇴직금 513,093천원 집행
2018년도	○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공무원 퇴직금 2,086,057천원 집행
2019년도	○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공무원 퇴직금 1,588,000천원 집행(9월말 기준)

□ **향후 기대효과**

-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준하는 퇴직금 지급